

2026년 안동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안동상공회의소에서는 2026년 안동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 안전·보건 관리 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내용

- 사업명: 2026년 안동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모집규모: 전문 수행기관 3개 모집 (수행기관은 최소 2개 ~ 최대 4개 사업소 배정)
- 예산규모: 총 50,000천원 (1개 사업소 5,000천원 (VAT 포함))
- 사업대상: 안동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 ~ 49인 사업장 10개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4. 29.(수) ~ 2026. 5. 14.(목) 16:00
- 신청방법: 안동상공회의소 E-mail 접수 (andongcci@naver.com)
- 신청자격: 관련분야 면허·등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지정받은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지도사 설립법인, 노무법인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1] 1부
2. 사업계획서(A4용지 5페이지 이내)[붙임1] 1부
3. 수행요원 경력서[붙임2] 1부
4.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증명서[붙임3] 1부
5. 서약서[붙임4]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5] 1부
7. 기타 첨부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정서or등록증 사본 1부)
- 선정방법: 본 회의소가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정량·정성)를 통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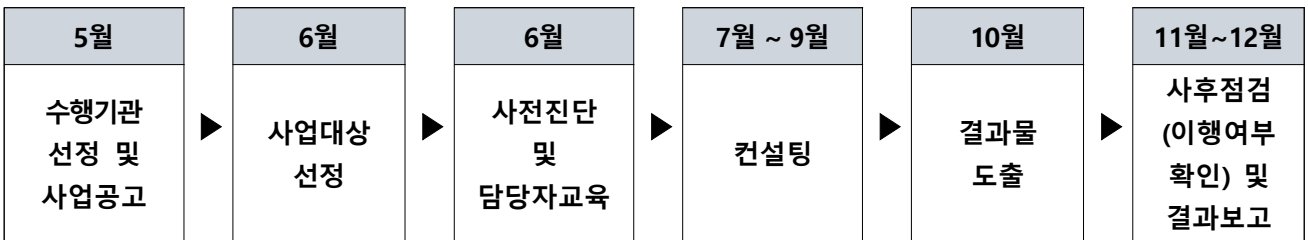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에 대응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함
 -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개요

- 모집규모: 수행기관 3개 모집
 - ☞ 수행기관은 최소 2개 ~ 최대 4개 사업소 배정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 ☞ 컨설팅 완료 후 사후점검(이행여부 확인)까지 수행 후 사업 종료
- 예산규모: 총 50,000천원 (1개 사업소 5,000천원 (VAT 포함))
 - ☞ 사업소별 3회 이상 방문 원칙 (사전점검, 컨설팅, 사후점검: 이행여부 확인)
- 사업대상: 안동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 ~ 49인 사업장 10개소
 - ☞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선정
 - ☞ 제외 대상: KOSHA-MS 인증 기업
- 추진절차:



- 과업내용: 수행기관은 2페이지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과업을 수행
- 선정방법: 본 회의소가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정량·정성)를 통한 선정

■ 과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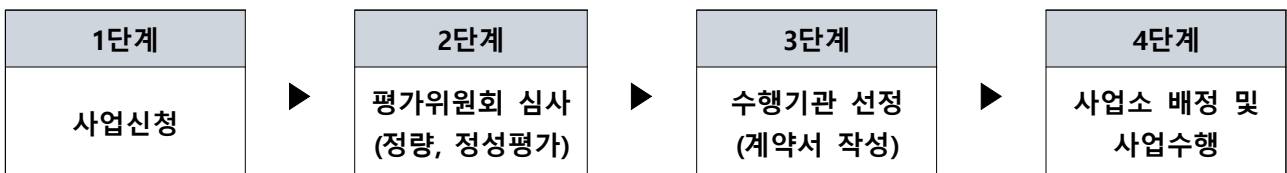
- 중점과업: 중소기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필수사업]** + **[선택사업 1가지]** 를 연계 지원
 - **[필수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선택사업 1]** (제조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 **[선택사업 2]** (건설업)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 ☞ 선택사업은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선택 지원
- 단계별 컨설팅 내용:

사업명	회차	내용
[필수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선택사업1]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OR [선택사업2]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0단계 (계획수립)	· 기업 분석 및 과업주제, 범위, 기간 등 협의
	1단계 (사전점검)	· 사업장 기본 정보 파악 ·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진단, 사전준비 사항 확인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 확인 · 대표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면담
	2단계 (컨설팅)	·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보건 관련 계획서 수립(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전반), 매뉴얼작성, 절차서 작성 등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개선대책 마련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 실시(대표자, 근로자)
	3단계 (사후점검: 이행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상황 점검 -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대표자 최종 면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결과물 도출 - 대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지 확인 등

- 수행기관은 과업의 수행 및 제반 사항에 대해 본 회의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
- 제출한 수행요원 경력서 상의 인물이 사업소(현장)를 3회이상 방문하여 컨설팅
 - ☞ 4페이지 수행요원(컨설턴트)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
- 대표자 혹은 안전관리담당자 필수 면담(2회 이상: 사전점검, 사후점검: 이행여부 확인)
- 결과물은 법적 의무사항의 충족 여부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지속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4. 29.(수) ~ 2026. 5. 14.(목) 16:00
- 신청방법: 안동상공회의소 E-mail 접수 (andongcci@naver.com)
- 신청자격: 관련분야 면허·등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지정받은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 안전지도사 설립법인, 노무법인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1] 1부
2. 사업계획서(A4용지 5페이지 이내)[붙임1] 1부
3. 수행요원 경력서[붙임2] 1부
4.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증명서[붙임3] 1부
5. 서약서[붙임4]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5] 1부
7. 기타 첨부서류
7-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3. 지정서or등록증or면허증 사본 1부
- 선정방법: 본 회의소가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정량·정성)를 통한 선정
☞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III.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참고
- 선정결과 발표: 안동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선정절차:



■ 참여물량 기준

- 수행기관은 최소 2개 ~ 최대 4개 사업소 배정
- ☞ 본 회의소에 제출한 수행요원 경력서 상의 인물이 사업소(현장) 3회이상 방문하여 컨설팅
- ☞ 수행요원이 본 사업 외에 일반대행 및 타 컨설팅을 병행 불가

■ 수행기관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산업안전(보건) 지도사가 동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무법인에 한하여 수행기관 자격을 가진 다른 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가능

■ 수행요원(컨설턴트) 자격

- 관련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 기계·전기·화학 분야 등
- 안전·보건 관련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KOSHA-MS 심사원, I45001 심사원
- 공인노무사
- 간호사(안전·보건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 자격 및 경력 판정 기준: 수행요원의 자격 및 실무경력은 [붙임 2] 수행요원 경력서와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를 대조하여 최종 판단.

■ 사업제한 조건

- 본 회의소는 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납부한 착수금 등 제반을 귀속 처리함
- ☞ 컨설팅 사업 수행 중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11월 말까지 사업수행률 80% 달성)
- ☞ 기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조항에 정하는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행요원은 반드시 보유인력(수행요원 경력서 제출 인원)으로 하며, 수행기관이 임의로 변경을 금지
- ☞ 단, 퇴직 혹은 일신상의 사유(질병, 사고 등)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가능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방법

- 심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선정기준에 의해 평가 후 선정
-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한 기관과 계약
- ☞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은 본 회의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60점)	○ 관련분야 지정·면허·등록증 보유 여부 - 수행기관의 지정·면허·등록증 보유 여부	15점
	○ 관련사업(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적 - 관련사업 수행 여부 및 실적	15점
	○ 수행요원의 자격 및 경력 - 수행요원의 자격여부(기술사, 지도사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및 투입 실적	15점
정성적 평가 (40점)	○ 과업이해도(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전략) - 세부과업 및 추진전략 계획	20점
	○ 결과물의 퀄리티 - 결과물의 완성도 및 실효성 - 법적의무사항(위험성 평가 등)의 충족 여부	20점
	○ 사후관리 계획(이행여부 점검 및 업체 모니터링)	15점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054-859-3090 (안동상공회의소 총무부)